

장학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지급에 관하여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의 장학금 지급은 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 26>

제3조(사무관장)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 및 관리는 학생처에서, 출납은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구성) 본교의 장학정책 수립과 장학예산 배정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당연직위원 : 총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위촉위원 :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받아 1~2인을 선정한다.

1. 위원장은 총장,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담당한다.

2.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과 동일하다.

3. 대학원위원회의 추천위원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장학위원회의 기능)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교의 장학규정(내규포함) 및 장학제도의 기본정책 및 장학금 예산에 관한 심의

2. 본교 및 외부장학금(불특정)의 종목별 액수 배정

3.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 수혜기간 및 지급 기준액 및 장학금 반환 금액의 심의 결정

4. 각 과정에서 추천된 지급 대상자의 심사와 확인

5. 기타 장학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 1. 26>

제6조(정족수) 장학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규정의 수개정) 본 규정의 수개정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제8조(장학금 종류 및 신청과 지급 절차) 장학금 종류와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내규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장학범위 결정) 본교의 각종 장학범위와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0조(지급대상) 본교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이어야 한다.

1. 본교 신입생 중 교수가 추천한 자 <개정 2016. 1. 26>

2. 재학생 중 성적 우수 학생 <개정 2016. 1. 26>

3. 가정 사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4. 교내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 학생

5. 본교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6. 본교 재학생으로 만 2년 이내의 개척 목회자

7. 본교 직원 혹은 교직원 자녀

8. 한 가족 2인 이상 본교 재학 중인 자

9.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자녀로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10.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11조(신청절차) 본 규정 제12조의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라 해당 학생이 매 학기 학교 웹프로그램에서 신청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2조(선발기준)

1. 직전(前)학기 성적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 또는 정정된 성적이 없어야 한다. 단, 근로, 섬김, 은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2. 7>
2. 해당 학기에 평균평점이 3.0(B)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 섬김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 26, 개정 2020. 2. 7>
3. 채플 및 신학과 실천 과목에 과락이 없어야 한다.
4. 매 학기 실시하는 성경고사를 합격해야 한다.
5. 멘토는 학생의 가정 형편과 학교활동 교회활동을 각별히 참고하여 추천한다.
6. 장학생수는 과정별, 학년별 균형을 유지하되 선발 시 상급학년이나 학기를 우선한다. (30명 및 학년을 기준단위로 한다).
7. 6항에 따랐음에도 성적이 동일할 경우 ①학점수 ②총점 ③연령(연장자)을 반영한다. <개정 2016. 1. 26>

제13조(선발세부사항) 제12조의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과정 학년 성적우수 장학금은 해당 학기 성적(평균 4.0(A) 이상인) 수석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학기에 15학점(Th.M. 및 목회신학원 9학점, 전문과정 12학점)이상 취득해야 한다. 단, M.Div. 5학기생은 12학점도 가능하다. <개정 2016. 1. 26, 2020. 2. 7>
2. <삭제>
3. 개척 목회자는 총회에 등록된 개척 일자 기준 만 2년 이내의 학생이어야 하며, 총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성적 평균 2.7(B-)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지급 결정 유효 기간) 장학금의 지급 유효 기간은 해당 학기로 제한한다.

(장학생의 확정) 학생처는 각 과정, 학년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성적, 이중추천 여부, 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5조(장학생 명단의 공개) 학생처는 장학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공고한다.

제16조(지급결과 보고서의 인준 및 보고) 학생처는 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학위원회 회의 인준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장학대상 탈락자의 구제) 행정상이나 담당교수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 장학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대학위원회의 결의 혹은 교무회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구제할 수 있다. 단, 구제를 결정할 경우 해당 사유가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0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0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장학금 지급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교의 장학규정 제8조에 의거, 제정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기준 액)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조건 및 지급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26, 2020. 2. 7>

| 구분 | 장학금 종류 | 수혜자격 기준 | 지급금액 |
|------------------------------|---|---|---|
| 교 내 장 학 금 | 학생회임원 장학금 | 총원우회임원단 3명 평생교육원자치회 임원 2-3명 목회신학원 임원 3명 | 원우회, 평생교육원 1명: 수업료 100%(회장) 1명: 수업료 50%(부회장) 1명: 수업료 50%(총무) |
| | 성적우수 장학금 | 1. 각 학년, 각 학과 수석자. ① 학업성적이 4.0(A) 이상 ② 해당 학기에 15학점(Th.M. 및 목회신학원 9학점, 전문과정 12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M.Div. 5학기생은 12학점도 가능. | 수업료 100% |
| | 근로장학금 | 본교 재학생 | 지정금액 |
| | 개척목회자 장학금 | 개척 만2년 이내의 재학생 | 수업료 100% |
| | 교직원장학금 | 본교 및 법인 직원 | 수업료 50% |
| | 한가족장학금 | 1. 한 가족 2인 이상 본교 신학과, 평생교육원 재학 중인 학생 중 1인(장학범위: 주민등록상의 직계가족) 2. 장학기간: 두 명 이상 모두 재학 중까지 | 수업료 50% |
| | 은혜장학금 (개정2020.2.7) | 1. 경제적사정이 곤란한자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단 등록금 범위 내)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이에 준하는자(증명서구비) ②담당목회자가 추천한자(추천서)③멘토가 추천한자(추천서) 2.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일정금액 |
| | 섬김장학금 (신설2016.1.26) | 1. 학교행사에 솔선수범하며, 자신의 달란트와 시간으로 봉사하고, 여러 분야에서 학교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2. 멘토, 학생처장, 원우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일정금액을 지급 | 일정금액 |
| | 목회자가족장학금 (신설2016.1.26) | 1. 성락교회 목사 및 배우자, 자녀 (단 재학기간 중 1인에 한함) 2. 교역자 증빙서류 및 관련서류 3.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수업료 100%, 50% |
| | 총장특별추천 장학금 (개정2020.2.7) | 1. 총장의 특별 추천을 받은 자 2.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일정금액 |
| 시무언성적우수 장학금 (신설2020.2.7.) | 1. 시무언장학금(개인) 대상자 중 성적우수장학금 기준을 충족하는 수석자 2.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일정금액 | |
| 교 외 장 학 금 | 시무언장학금 | 서울성락교회 시무언 장학규정 해당자 | 지정금액 |
| | 보훈장학금 | 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 지정금액 |
| | 지정장학금 | 단체나 개인이 지정한 학생 | 지정금액 |
| | 국제이사회 장학금 |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지급 | 지정금액 |

제3조(지급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1.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2. 타교에 전입학을 기도한 자
3. 휴학 중인 자
4. 장학생 추천에서 제외된 자
5. 당해 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6. 소정 기일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4조(장학금의 반환)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에게는 장학혜택이 취소되고 반드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 받은 후 타교로 전학한 자는 수혜 장학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 장학금 수혜자가 학기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 전액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1) 징계를 받은 자
- 2) 장학추천기관에서 해야 할 봉사나 활동을 하지 않은 자
- 3) 장학추천기관에서 추천을 철회한 자

제5조(근로장학생) 본교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하는 학생의 추천과 근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처는 근로 학생 소요 인원을 파악하여 학생처에 통보한다.
2. 학생처는 이를 기초로 근로 학생 모집 공고를 게시한다.
3. 각 과정 및 학년 지도교수, 멘토가 추천한다.
4. 학생처는 사무처 그리고 근로부서와 협의하여 배정하되 성적과 본인의 희망사항을 참작한다.
5. 근로 장학금 수혜자에게는 주당 20시간 내외의 근로를 부여할 수 있다.
6. 매일 소정의 근로일지를 쓰고 근로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근로부서장은 매학기 말에 근로학생 근무평가서를 작성 학생처로 보낸다.
8. 평가에서 F를 받으면 다음 학기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9. 근로학생이 부여받은 근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간과 봉사 유무에 따라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중복 지급 금지) 어떤 형태로든 장학금은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2020. 2. 7>

1. 교내·교외 장학금 합이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금은 은혜, 섬김, 근로, 교외 장학금이다.
3.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로 지급한다. 단, 섬김,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4. 시무연구좌장학금(개인) 대상자가 수석할 경우, 소정의 시무연구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한다.

제7조(교외 장학생 추천) 교외 장학재단 또는 독지가가 지급하는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과정 및 인원수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 학년 지도교수, 멘토와 협의하여 추천한다.
2.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처장이 추천하고 장학위원회에서 승인한다.
3. 교외 장학재단에서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4. 특정인의 교외 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사무처에 입금시킨 후 사무처에서 학생처로 서면 통보하면 동액의 장학금 지급 증서를 발급한다.

제8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장학금의 신청과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금신청 안내 공고문을 숙지한다.
2. 본교에서 통보한 해당 학기 성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교무처에 이의 신청을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3. 신청서에 멘토의 추천을 받는다.(소정양식)
4. 학생처에서 추천서 외에 구비서류를 접수한다.
5.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와 종목별 액수배정 및 지급 기준액 등을 학생처에 통보한다.
6. 학생처는 신청된 장학을 과정, 학과, 학년별로 명단을 작성, 분류, 선정하여 장학위원회에 제출한다.
7. 장학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처장이 제출한 장학관계 서류를 심의한다.
8.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9.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10. 매 학기 초 총장은 장학증서를 해당 학생에게 수여한다.
11.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대체 지급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2. 이 원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원칙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원칙은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내규는 201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6. 이 내규는 2020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